※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인식과 제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
| ② |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수익과 관련 비용의 동시 인식은 때때로 수익과 관련 원가의 대응을 나타낸다. |
| ③ |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
| ④ |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을 때 제거하고,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현재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 |
| ⑤ | 제거에 대한 회계 요구사항은 제거를 초래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후의 잔여 자산과 부채, 그리고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두 가지를 모두 충실히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
| ② |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최대 다수의 주요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이용자의 특정 일부집단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 ③ |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
| ④ |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⑤ |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는 변동될 수 없다. |

**3.**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은 재고자산에 대해 계속기록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에는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단일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자별 거래 자료   |  |  |  |  |  | | --- | --- | --- | --- | --- | | 일자 | 적요 | 수량 | 매입단가 | 비고 | | 1월 1일 | 기초재고 | 100개 | ￦200 | 전기말 실사수량 | | 3월 1일 | 매입 | 200개 | ￦200 |  | | 6월 1일 | 매입계약 | 200개 | ￦300 | 선적지 인도조건 | | 7월 1일 | 매출 | 200개 | - |  | | 9월 1일 | 매입계약 | 200개 | ￦300 | 도착지 인도조건 | | 11월 1일 | 매출 | 100개 | - |  |   ·  ㈜대한이 6월 1일에 계약한 상품 200개는 6월 30일에 창고로 입고되었다.  ·  ㈜대한이 9월 1일에 계약한 상품 200개는 11월 1일에 선적되었으나 12월 말 현재까지 운송중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  12월 말 현재 ㈜대한이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의 총 수량은 300개이고 실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  | | --- | | ·  ㈜대한은 12월 1일에 ㈜민국으로부터 상품 200개(단위원가 ￦300)에 대해 판매를 수탁받아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이 중 20%를 12월 중에 판매하였다.  ·  ㈜대한은 12월 1일에 ㈜만세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50개(단위원가 ￦240)를 적송하였다. 기말 실사 후 ㈜만세가 12월 말 현재 보관중인 상품은 20개임을 확인하였다. |   ·  ㈜대한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  수탁품과 적송품에서는 감모(분실, 도난 등)가 발생하지 않았다. |

20x1년 기말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200이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기초잔액이 ￦3,000일 때, ㈜대한의 20x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72,000 | ② | ￦74,400 | ③ | ￦81,800 |
| ④ | ￦85,000 | ⑤ | ￦88,000 |  |  |

**4.**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② |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
| ③ |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
| ④ |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
| ⑤ |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5.**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사용)를 ￦1,500,000에 취득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매년 말 감가상각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대한은 20x2년 1월 1일에 기계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해 ￦3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잔존가치는 ￦20,000 증가하였고 잔존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다. 동 기계장치의 매년 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
| 공정가치 | ￦1,020,000 | ￦1,350,000 |

㈜대한의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1년도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20x1년도 |  | 20x2년도 |
| ① | ￦480,000 감소 |  | ￦0 (영향 없음) |
| ② | ￦480,000 감소 |  | ￦30,000 감소 |
| ③ | ￦480,000 감소 |  | ￦200,000 감소 |
| ④ | ￦280,000 감소 |  | ￦30,000 감소 |
| ⑤ | ￦280,000 감소 |  | ￦200,000 감소 |

**6.**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사용)를 ￦2,000,000에 취득하였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은 기계장치의 손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  |  |
| --- | --- | --- |
| 20x1년도 | 20x2년도 | 20x3년도 |
| 손상없음 | 손상차손 발생 | 손상차손환입 발생 |

20x2년 말 동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70,000이고 사용가치는 ￦700,000이며, 20x3년 말 회수가능액은 ￦780,000이다. ㈜대한의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20,000 감소 | ② | ￦10,000 감소 | ③ | ￦0 (영향 없음) |
| ④ | ￦10,000 증가 | ⑤ | ￦20,000 증가 |  |  |

**7.**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인식조건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
| ② |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
| ③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
| ④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과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 ⑤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

**8.**㈜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을 20x3년 7월 1일에 ㈜민국에게 운용리스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대한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20x2년 말 | 20x3년 7월 1일 | 20x3년 말 |
| ￦2,000,000 | ￦2,500,000 | ￦3,000,000 |

㈜대한의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로 계산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45,000 감소 | ② | ￦455,000 증가 | ③ | ￦500,000 증가 |
| ④ | ￦600,000 증가 | ⑤ | ￦1,180,000 증가 |  |  |

**9.**㈜대한은 20x1년 3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x2년 9월 30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대한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구분 | 20x1.3.1. | 20x1.10.1. | 20x2.1.1. | 20x2.9.1. |
| 공사대금 지출액 | ￦300,000 | ￦400,000 | ￦300,000 | ￦120,000 |

|  |  |  |  |
| --- | --- | --- | --- |
| 종류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
| 특정차입금A | ￦240,000 | 20x1. 3.1.∼20x2. 9.30. | 6%(단리) |
| 일반차입금B | ￦240,000 | 20x1. 3.1.∼20x2. 6.30. | 6%(단리) |
| 일반차입금C | ￦60,000 | 20x1. 6.1.∼20x2.12.31. | 9%(단리) |

20x1년 3월 1일의 지출액에는 공장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 ￦200,000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차입금A 중 ￦100,000은 20x1년 4월 1일부터 20x1년 9월 30일까지 연 이자율 3%(단리)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대한이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연평균 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그리고 모든 차입금과 정기예금은 매월 말 이자 지급(수취) 조건이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6,450 | ② | ￦21,900 | ③ | ￦23,400 |
| ④ | ￦42,700 | ⑤ | ￦53,200 |  |  |

**10.**㈜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시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민국의 사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  |
| --- |
|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지급  ·  유효이자율: 연 6% |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20x1년도 표시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x1년 말에 상기 사채의 신용이 손상되어 향후 표시이자 수령 없이 만기일에 원금의 80%만 회수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은 20x2년에 예상대로 이자는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20x2년 말 현재 상황이 호전되어 사채의 만기일에 원금의 10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자는 회수불가능). 상기 사채의 20x1년 말과 20x2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각각 ￦700,000과 ￦820,000이다.

 ㈜대한의 상기 금융자산이 (1)20x1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2)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4% | 6% | 4% | 6% |
| 1년 | 0.9615 | 0.9434 | 0.9615 | 0.9434 |
| 2년 | 0.9246 | 0.8900 | 1.8861 | 1.8334 |
| 3년 | 0.8890 | 0.8396 | 2.7751 | 2.6730 |

|  |  |  |  |
| --- | --- | --- | --- |
|  | (1)20x1년도 총포괄이익 |  | (2)20x2년도 당기순이익 |
| ① | ￦206,520 감소 |  | ￦213,200 증가 |
| ② | ￦206,520 감소 |  | ￦231,400 증가 |
| ③ | ￦186,520 감소 |  | ￦213,200 증가 |
| ④ | ￦186,520 감소 |  | ￦231,400 증가 |
| ⑤ | ￦186,520 감소 |  | ￦121,200 증가 |

**11.**㈜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사채를 동 일자에 ￦950,244에 취득하였으며, 이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민국의 사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  |
| --- |
|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지급  ·  유효이자율: 연 10% |

 20x1년 12월 31일에 ㈜대한과 ㈜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  |
| --- |
| ·  만기일: 20x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20x2년부터 연 5%로 인하, 매년 말 지급  ·  변경시점의 현행시장이자율: 연 12% |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124,360은 ㈜대한이 부담하였다. ㈜대한은 재협상을 통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기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대한이 20x2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10% | 12% | 10% | 12% |
| 1년 | 0.9091 | 0.8929 | 0.9091 | 0.8929 |
| 2년 | 0.8264 | 0.7972 | 1.7355 | 1.6901 |
| 3년 | 0.7513 | 0.7118 | 2.4868 | 2.4019 |

|  |  |  |  |  |  |
| --- | --- | --- | --- | --- | --- |
| ① | ￦50,000 | ② | ￦87,564 | ③ | ￦89,628 |
| ④ | ￦95,024 | ⑤ | ￦96,527 |  |  |

**12.**㈜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3개월이 경과된 20x1년 4월 1일에 동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AC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20x1년 4월 1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4%이다.

|  |
| --- |
| ·  권면상 발행일: 20x1년 1월 1일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지급 |

  ㈜대한은 20x2년 4월 1일에 액면금액 중 ￦600,000을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610,000에 조기상환하였다. ㈜대한의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4% | 6% | 4% | 6% |
| 1년 | 0.9615 | 0.9434 | 0.9615 | 0.9434 |
| 2년 | 0.9246 | 0.8900 | 1.8861 | 1.8334 |
| 3년 | 0.8890 | 0.8396 | 2.7751 | 2.6730 |

|  |  |  |  |  |  |
| --- | --- | --- | --- | --- | --- |
| ① | ￦3,968 감소 | ② | ￦6,226 감소 | ③ | ￦22,830 감소 |
| ④ | ￦2,258 증가 | ⑤ | ￦12,636 증가 |  |  |

**13.**‘종업원급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확정기여제도에서 가입자의 미래급여금액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금의 운영효율성 및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
| ② | 확정급여제도에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 ③ |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 ④ | 확정급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
| ⑤ |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서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4.**㈜대한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20x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900,000이다.  ·  20x1년 5월 1일에 퇴직종업원에게 ￦2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x1년 9월 1일에 사외적립자산에 ￦12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x1년도의 당기근무원가 발생액은 ￦300,000이다.  ·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400,000이다.  ·  20x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920,000이다.  ·  순확정급여자산(부채)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매년 변동이 없다.  ·  관련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은 월할로 계산한다. |

 ㈜대한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1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300,000 감소 | ② | ￦280,000 감소 | ③ | ￦260,000 감소 |
| ④ | ￦240,000 감소 | ⑤ | ￦220,000 감소 |  |  |

**15.**20x1년 1월 1일에 ㈜대한은 보통주와 우선주(배당률 2%)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설립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으며, 배당결의와 지급은 없었다. 20x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1주당 액면금액 | 자본금 |
| 보통주 | ￦1,000 | ￦10,000,000 |
| 우선주 | ￦1,000 | ￦6,000,000 |

 20x4년 2월, 주주총회에서 총 ￦1,080,000의 현금배당이 결의되었다. ㈜대한의 우선주가 (1)누적적, 5% 부분참가적인 경우와 (2)비누적적, 완전참가적인 경우,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대한의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며 자기주식은 취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1) |  | (2) |
| ① | ￦525,000 |  | ￦475,000 |
| ② | ￦525,000 |  | ￦675,000 |
| ③ | ￦540,000 |  | ￦405,000 |
| ④ | ￦540,000 |  | ￦675,000 |
| ⑤ | ￦555,000 |  | ￦405,000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6번과 17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  | | --- | |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지급  ·  발행시점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8%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사채액면금액 ￦20,000당 보통주 1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20,000에 인수  ·  상환할증금: 만기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를 지급 |   ·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4% | 8% | 10% | 4% | 8% | 10% | | 1년 | 0.9615 | 0.9259 | 0.9091 | 0.9615 | 0.9259 | 0.9091 | | 2년 | 0.9246 | 0.8573 | 0.8264 | 1.8861 | 1.7832 | 1.7355 | | 3년 | 0.8890 | 0.7938 | 0.7513 | 2.7751 | 2.5770 | 2.4868 |   ·  ㈜대한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인식한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중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20x2년 1월 1일에 ㈜대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

**16.**㈜대한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인식할 신주인수권대가는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20,000 | ② | ￦23,740 | ③ | ￦79,380 |
| ④ | ￦100,000 | ⑤ | ￦103,120 |  |  |

**17.**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에 ㈜대한이 인식해야 하는 자본 변동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405,744 증가 | ② | ￦409,496 증가 | ③ | ￦415,240 증가 |
| ④ | ￦434,292 증가 | ⑤ | ￦443,788 증가 |  |  |

**18.**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3년의 용역제공조건과 함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300으로 추정하였다. 가득되는 주식선택권 수량은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에 따라 결정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 1인당 가득되는 주식선택권 수량 |
| 10% 미만 | 0개 (가득되지 않음) |
| 10% 이상 15% 미만 | 150개 |
| 15% 이상 | 200개 |

 20x1년의 매출액증가율은 15%이었으며, 20x3년까지 동일한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x2년의 매출액증가율은 11%이었으며 20x3년에도 11%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x3년의 매출액증가율은 1%에 불과하여 최종적으로 가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종업원 모두가 20x3년 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 예측은 실현되었다.

 ㈜대한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3,000,000 감소 | ② | ￦1,000,000 감소 | ③ | ￦0 (영향 없음) |
| ④ | ￦1,000,000 증가 | ⑤ | ￦3,000,000 증가 |  |  |

**19.**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인 상품권 50매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20x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한이 상품권을 발행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20x2년 1월 1일에 추가로 100매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대한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하며,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만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만기 이후 1년 이내에는 90%의 현금으로 상환해줄 의무가 있으나, 1년이 경과하면 그 의무는 소멸한다. 20x1년도 발행 상품권 중 42매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중 5매는 20x2년 중에 현금으로 상환되었고, 나머지 3매는 상환되지 않아 20x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한편, 20x2년도 발행 상품권은 20x2년 중에 90매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분 | 금액 |
| 20x1년도 발행분 | ￦31,000 |
| 20x2년도 발행분 | ￦77,000 |

 ㈜대한의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고객의 미행사권리에 대한 대가를 다른 당사자에게 납부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823,000 | ② | ￦833,000 | ③ | ￦850,000 |
| ④ | ￦858,000 | ⑤ | ￦860,000 |  |  |

**20.**20x1년 10월 1일에 ㈜대한은 제품 120개를 고객에게 개당 ￦1,000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제품은 6개월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며, 각 제품에 대한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된다. ㈜대한은 20x1년 10월 31일에 제품 5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후, 추가로 제품 30개를 개당 ￦800에 고객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추가된 제품 30개는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20x1년 1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약수량 중 40개와 추가 계약수량 중 2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계약을 변경할 때, 추가 제품의 가격(￦800/개)이 (1)계약변경 시점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된 경우와 (2)계약변경 시점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대한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계약변경일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제품은 계약변경일 전에 이전한 제품과 구별된다.

|  |  |  |  |
| --- | --- | --- | --- |
|  | (1) |  | (2) |
| ① | ￦16,000 |  | ￦18,800 |
| ② | ￦90,000 |  | ￦87,600 |
| ③ | ￦90,000 |  | ￦106,400 |
| ④ | ￦106,000 |  | ￦87,600 |
| ⑤ | ￦106,000 |  | ￦106,400 |

**21.**㈜대한은 ㈜민국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무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3년)  ·  연장선택권: ㈜대한은 리스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리스개시일 현재 동 선택권을 행사할 의도는 전혀 없다.  ·  리스료: ㈜대한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에 ￦2,000,000의 고정리스료를 ㈜민국에게 지급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면 20x4년 말과 20x5년 말에는 각각 ￦2,200,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내재이자율: ㈜대한은 동 리스에 적용되는 ㈜민국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  ㈜대한의 증분차입이자율: 연 8%(20x1.1.1.), 연 10%(20x3.1.1.)  ·  리스개설직접원가: ㈜대한은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246,000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  리스계약 당시 ㈜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의 잔존내용연수는 20년이다.  ·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  |  |  |  | | --- | --- | --- | --- | --- | |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8% | 10% | 8% | 10% | | 1년 | 0.9259 | 0.9091 | 0.9259 | 0.9091 | | 2년 | 0.8573 | 0.8264 | 1.7832 | 1.7355 | | 3년 | 0.7938 | 0.7513 | 2.5770 | 2.4868 | |

㈜대한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을 사용한다. 20x3년 1월 1일에 영업환경의 변화 때문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해졌다면 ㈜대한의 20x3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3,436,893 | ② | ￦3,491,560 | ③ | ￦3,526,093 |
| ④ | ￦3,621,613 | ⑤ | ￦3,760,080 |  |  |

**22.**금융업을 영위하는 ㈜대한리스는 20x1년 1월 1일에 ㈜민국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리스는 ㈜민국이 지정하는 기계설비를 제조사인 ㈜만세로부터 신규 취득하여 20x1년 1월 1일부터 ㈜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배송한다.  ·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리스기간 종료 후 반환조건)  ·  잔존가치 보증: ㈜대한리스는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를 ￦10,000,000으로 예상하며, ㈜민국은 ￦7,000,000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  리스개설직접원가: ㈜대한리스와 ㈜민국이 각각 ￦300,000과 ￦200,000을 부담하였다.  ·  ㈜대한리스는 상기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고, 동 리스에 대한 내재이자율로 연 10%를 산정하였다.  ·  연간 정기리스료: 매년 말 ￦3,000,000 지급  ·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  |  | | --- | --- | --- |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3년 | 0.7513 | 2.4868 | |

 ㈜대한리스의 (1)기계설비 취득원가(공정가치)와 (2)리스기간 종료 시 회수된 기계설비의 실제 잔존가치가 ￦5,000,000인 경우의 손실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1)취득원가 |  | (2)회수 시 손실금액 |
| ① | ￦14,673,400 |  | ￦3,000,000 |
| ② | ￦14,673,400 |  | ￦5,000,000 |
| ③ | ￦14,973,400 |  | ￦2,000,000 |
| ④ | ￦14,973,400 |  | ￦3,000,000 |
| ⑤ | ￦14,973,400 |  | ￦5,000,000 |

**23.**㈜대한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각각￦815,000과 ￦600,000이다. ㈜대한의 20x1년과 20x2년의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항목 | 20x1년도 | 20x2년도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6,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2,000 | - |
| 제품보증충당부채 | - | ￦3,000 |
| 정기예금 미수이자 | - | 4,000 |

 20x1년도 세무조정 항목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000은 20x2년부터 매년 ￦2,000씩 소멸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 금융자산)은 20x2년 중에 처분될 예정이다.

 20x2년도 세무조정 항목 중 제품보증충당부채 ￦3,000은 20x3년부터 매년 ￦1,000씩 소멸되며, 정기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인 20x3년 3월 말에 수취한다. ㈜대한의 20x1년도 법인세율은 30%이며, 미래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20x2년도 | 20x3년도 이후 |
| 적용세율 | 30% | 25% |

 ㈜대한의 20x2년도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단, 20x1년 1월 1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잔액은 없으며, 일시적 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76,800 | ② | ￦177,750 | ③ | ￦178,400 |
| ④ | ￦179,950 | ⑤ | ￦180,350 |  |  |

**24.**㈜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5,260,000이며,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20x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30,000주(주당 액면금액 ￦1,500)이며, 유통우선주식수는 2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배당률 5%)이다.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며,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우선주배당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20x1년 7월 1일에 보통주 2,000주를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하였으며, 9월 1일에 3,200주를 무상증자하였다.  ·  20x1년 10월 1일에 전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0,000 중 2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가격은 ￦500이다.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은 ￦171,000이며, 세율은 20%이다. |

 ㈜대한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49 | ② | ￦166 | ③ | ￦193 |
| ④ | ￦288 | ⑤ | ￦296 |  |  |

**25.**다음은 ㈜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자료   |  |  |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50,000 | | 법인세비용 | ? | | 이자비용 | 30,000 | | 감가상각비 | 77,000 |   ·  20x1년 말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   |  |  |  |  | | --- | --- | --- | --- | | 계정과목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증감 | | 매출채권 | ￦186,000 | ￦224,000 | ￦38,000 감소 | | 재고자산 | 130,000 | 115,000 | 15,000 증가 | | 매입채무 | 144,000 | 152,000 | 8,000 감소 | | 미지급이자 | 9,500 | 12,000 | 2,500 감소 | | 당기법인세부채 | 31,000 | 28,000 | 3,000 증가 | | 이연법인세부채 | 2,600 | 4,000 | 1,400 감소 | |

 ㈜대한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대한이 20x1년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이 ￦1,884,900일 경우,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1,713,600 | ② | ￦1,754,200 | ③ | ￦1,791,300 |
| ④ | ￦1,793,800 | ⑤ | ￦1,844,100 |  |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6번과 27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대한은 20x1년 중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150주(지분율 15%)를 ￦15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대한은 20x2년 초에 추가로 ㈜민국의 나머지 의결권 있는 보통주 850주(지분율 85%)를 취득하여 합병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을 위해 ㈜대한은 ￦200,000의 현금과 함께 보통주 500주(액면총액 ￦500,000, 공정가치 ￦800,000)를 발행하여 ㈜민국의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1,200, 액면가는 주당 ￦1,000이다. ㈜대한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10,000의 신주발행비용을 지출하였다.  ·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요약재무상태표  20x2년 1월 1일 현재 | | | | | |  |  | 장부금액 |  | 공정가치 | | 유동자산 |  | ￦150,000 |  | ￦200,000 | | 유형자산(순액) |  | 1,050,000 |  | 1,280,000 | | 자산 |  | ￦1,200,000 |  |  | | 부채 |  | ￦600,000 |  | ￦600,000 | | 자본금 |  | 200,000 |  |  | | 이익잉여금 |  | 400,000 |  |  | | 부채와 자본 |  | ￦1,200,000 |  |  |   ·  ㈜대한은 합병과 관련하여 만세회계법인에게 ㈜민국의 재무상태 실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30,000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대한은 합병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였는데, 이 팀 유지 원가로 ￦20,000을 지출하였다.  ·  합병일 현재 ㈜민국의 종업원들은 회사 경영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한은 합병일 이후 즉시 ㈜민국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으며, ㈜대한의 경영진은 이러한 ㈜민국의 종업원들의 가치를 ￦80,000으로 추정하였다.  ·  합병일 현재 ㈜민국의 상표명 ‘K-World’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국이 해당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을 업계 및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어, 합병 이후 ㈜대한이 이 상표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은 이 상표권의 가치를 ￦30,000으로 추정하였다. |

**26.**㈜대한이 합병일(20x2년 1월 1일)에 수행한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를 통해 인식한 영업권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240,000 | ② | ￦270,000 | ③ | ￦290,000 |
| ④ | ￦300,000 | ⑤ | ￦330,000 |  |  |

**27.**다음은 ㈜대한과 ㈜민국에 대한 <추가자료>이다.

|  |
| --- |
| <추가자료>  ·  합병일 현재 ㈜대한은 ㈜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된 상태이다. 합병일 현재 ㈜대한과 ㈜민국 간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배상금의 공정가치는 ￦20,000으로 추정되고, 합병에 의해 이 소송관계는 정산되었다. ㈜대한은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

 위 <자료>와 <추가자료>가 ㈜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0 (영향 없음) | ② | ￦20,000 감소 | ③ | ￦30,000 감소 |
| ④ | ￦50,000 감소 | ⑤ | ￦70,000 감소 |  |  |

**28.**㈜대한은 20x1년 초에 보유하던 토지(장부금액 ￦20,000, 공정가치 ￦30,000)를 ㈜민국에 출자하고, 현금 ￦10,000과 ㈜민국의 보통주 30%를 수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출자 당시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50,000이며 이는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x1년 말 현재 해당 토지는 ㈜민국이 소유하고 있으며, ㈜민국은 20x1년도 당기순이익으로 ￦10,000을 보고하였다. ㈜민국에 대한 현물출자와 지분법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현물출자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6,000 증가 | ② | ￦8,000 증가 | ③ | ￦9,000 증가 |
| ④ | ￦11,000 증가 | ⑤ | ￦13,000 증가 |  |  |

**29.**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지분법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이다. |
| ② |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가 구입된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
| ③ |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 ④ |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
| ⑤ | 관계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

**30.**㈜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6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20x2년 초에 ㈜대한은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잔존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민국에 ￦40,000에 매각하였다. 20x3년 말 현재 해당 기계장치는 ㈜민국이 사용하고 있다. ㈜대한과 ㈜민국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x3년도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대한 | ㈜민국 |
| 당기순이익 | ￦20,000 | ￦10,000 |

 ㈜대한의 20x3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 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22,000 | ② | ￦23,600 | ③ | ￦26,000 |
| ④ | ￦28,400 | ⑤ | ￦30,000 |  |  |

**※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75%를 ￦1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자본금 ￦100,000, 이익잉여금 ￦50,000)이다.  ·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추가정보 | | 토지 | ￦50,000 | ￦80,000 | 원가모형 적용 |   ·  20x1년 중에 ㈜민국은 원가 ￦1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대한에게 ￦20,000에 판매하였다. ㈜대한은 이 재고자산의 50%를 20x1년 중에 외부로 판매하고, 나머지 50%는 20x1년 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  ㈜민국이 보고한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0이다.  ·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대한과 ㈜민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모두 20%이며, 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

**31.**법인세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대한이 지배력 획득일에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10,500 | ② | ￦15,000 | ③ | ￦19,500 |
| ④ | ￦32,000 | ⑤ | ￦43,500 |  |  |

**32.**법인세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대한의 20x1년 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영업권 손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6,000 | ② | ￦6,500 | ③ | ￦7,000 |
| ④ | ￦8,000 | ⑤ | ￦8,500 |  |  |

**33.**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외화위험회피의 경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투자는 제외한다. |
| ② | 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두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한 항목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③ |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
| ④ | 단일 항목의 구성요소나 항목 집합의 구성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
| ⑤ |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다만, 외화위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

**34.**㈜대한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대한은 20x2년 3월 말에 100개의 배터리를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한은 배터리의 판매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20x1년 12월 1일에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도거래 계약기간: 20x1년 12월 1일 ∼ 20x2년 3월 31일(만기 4개월)  ·  선도거래 계약내용: 결제일에 100개의 배터리에 대해 선도거래 계약금액(개당 ￦12,000)과 시장가격의 차액이 현금으로 결제된다.  ·  현물가격 및 선도가격 정보:     |  |  |  |  |  | | --- | --- | --- | --- | --- | | 일 자 |  | 현물가격(개당) |  | 선도가격(개당) | | 20x1. 12. 1. |  | ￦13,000 |  | ￦12,000 (만기 4개월) | | 20x1. 12. 31. |  | 12,500 |  | 11,300 (만기 3개월) | | 20x2. 3. 31. |  | 10,500 |  |  |   ·  배터리의 개당 제조원가는 ￦10,000이고, 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예측과 같이, ㈜대한은 20x2년 3월 말에 배터리를 판매하였다. ㈜대한이 위 거래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파생상품 평가손익 계산 시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배터리 판매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0 (영향 없음) | ② | ￦130,000 증가 | ③ | ￦150,000 증가 |
| ④ | ￦180,000 증가 | ⑤ | ￦200,000 증가 |  |  |

**35.**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 ②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모든 금액(즉, 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 비교표시되는 금액 포함)을 최근 재무상태표 일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다만, 금액을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에 보고한 재무제표의 금액(즉,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효과나 환율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 ③ |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 및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가 처음 발생되는 시점부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 ④ |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
| ⑤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

**36.**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에서 설명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 ② | 연금충당부채란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 ③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
| ④ |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된다. |
| ⑤ | 보험충당부채 평가 시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방식이 보험금 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

**37.**다음 중「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을 말한다. |
| ② |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
| ③ |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
| ④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⑤ |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38.**다음 중「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
| ② | 장기 선수수익은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하며, 기타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
| ③ | 비망계정은 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하며, 자산 또는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
| ④ |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석으로 표시한다. |
| ⑤ |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39.**중앙관서 A부처와 B부처는 20x1년 초에 각각 도로와 건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A부처는 도로를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B부처는 건물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  |
| --- |
| ·  취득원가: ￦10,000  ·  기대수익률: 연 5%  ·  사용수익권 부여기간: 10년  ·  B부처는 연간시설임대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해당 자산 취득 시 A부처의 자산증가액과 B부처의 자산증가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1의 정상연금 현가계수(5%, 10년)는 7.7217이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0 | ② | ￦2,950 | ③ | ￦10,000 |
| ④ | ￦12,950 | ⑤ | ￦20,000 |  |  |

**40.**다음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관서 A부처의 20x1년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회계자료이다. 아래 거래는 모두 현금거래이고, 국고금회계 이외의 다른 국가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는 없으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다른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  |
| --- |
| ·  20x1년도 사용료 수익은 ￦10,000이다.  ·  20x1년도 부담금 수익은 ￦15,000이다.  ·  20x1년 중에 토지를 ￦8,000에 취득하였다.  ·  20x1년도 인건비로 ￦20,000을 집행하였다.  ·  20x1년도 보전비로 ￦2,000을 집행하였다. |

 위 거래들이  20x1년 말 (1)중앙관서 A부처의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2)국가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1)중앙관서 A부처 |  | (2)국가(대한민국 정부) |
| ① | ￦8,000 증가 |  | ￦8,000 증가 |
| ② | ￦8,000 증가 |  | ￦3,000 증가 |
| ③ | ￦11,000 증가 |  | ￦8,000 증가 |
| ④ | ￦11,000 증가 |  | ￦3,000 증가 |
| ⑤ | ￦23,000 증가 |  | ￦8,000 증가 |

**41.**㈜대한은 두 개의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두 개의 생산부문 C와 D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x3년 2월의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  부문 | 보조부문 | | 생산부문 | | 합계 | | A | B | C | D | | A | 200시간 | 800시간 | 800시간 | 400시간 | 2,200시간 | | B | 4,000kW | 1,000kW | 2,000kW | 2,000kW | 9,000kW |   ·  제조간접원가는 A부문에서 시간당 ￦100, B부문에서 kW당 ￦2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C부문과 D부문에서 각각 ￦161,250과 ￦40,000이 발생하였다.  ·  보조부문의 원가는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생산부문에 배분한다.  ·  C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원가(prime costs)는 ￦10,000이며, 생산단위는 50단위이다.  ·  갑제품에 대한 월초 및 월말재공품은 없다. |

 갑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4,775 | ② | ￦14,775 | ③ | ￦18,000 |
| ④ | ￦22,775 | ⑤ | ￦24,000 |  |  |

**42.**㈜대한은 20x3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은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며,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의 8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50,000,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50,000과 ￦30,000이다. 기말재공품에는 직접재료원가 ￦10,000과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8,000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원가가 ￦100,000이라면, 20x3년 기말제품원가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0 | ② | ￦2,000 | ③ | ￦8,000 |
| ④ | ￦10,000 | ⑤ | ￦12,000 |  |  |

**43.**㈜대한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여 반도체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생산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월의 생산자료를 보면, 기초재공품 15,000개(전환원가 완성도 40%, 원가 ￦10,000), 당월 생산착수수량 70,000개, 당월 생산착수완성품 55,000개, 기말재공품 5,000개(전환원가 완성도 80%), 공손품 10,000개이다. 2월 중 직접재료원가 ￦140,000과 전환원가 ￦210,000이 발생하였다. 공정의 2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상공손 허용수준은 합격품의 10%이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에 가산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된다. 공손품은 모두 폐기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대한의 2월의 정상공손원가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15,000 | ② | ￦15,600 | ③ | ￦16,200 |
| ④ | ￦16,800 | ⑤ | ￦17,400 |  |  |

**44.**㈜대한은 20x3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대한의 20x3년 1월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생산량은 500개이며, 판매량은 300개이다.  ·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이다.  ·  판매관리비는 ￦200,000이다.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760,000이다.  ·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400,000이다.  ·  제조원가는 변동원가인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고정원가인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에 발생한 총제조원가는 ￦3,000,000이다.  ·  월말재공품은 없다. |

 20x3년 1월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600,000 | ② | ￦900,000 | ③ | ￦1,200,000 |
| ④ | ￦1,500,000 | ⑤ | ￦1,800,000 |  |  |

**45.**㈜대한의 A사업부는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투자중심점이다. A사업부에 대해 요구되는 최저필수수익률은 15%,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0%, 그리고 법인세율은 40%이다. 다음은 20x3년도 ㈜대한의 A사업부에 관한 예산자료이다.

|  |
| --- |
| ·  A사업부의 연간 총고정원가는 ￦400,000이다.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550이다.  ·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200이다.  ·  제품의 연간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2,000단위이다.  ·  A사업부에 투자된 평균영업자산과 투하자본은 각각 ￦1,000,000이다. |

 A사업부의 잔여이익(RI)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잔여이익 |  | 경제적 부가가치 |
| ① | ￦150,000 |  | ￦80,000 |
| ② | ￦150,000 |  | ￦90,000 |
| ③ | ￦150,000 |  | ￦100,000 |
| ④ | ￦140,000 |  | ￦80,000 |
| ⑤ | ￦140,000 |  | ￦90,000 |

**46.**㈜대한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20x3년 2월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기초재고수량 | 600단위 |  |
| 기말재고수량 | 400단위 |  |
| 실제판매량 | 4,200단위 |  |
| 단위당 판매가격 | ￦10,000 |  |
|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0,000 |  |
| 고정판매관리비 | ￦3,000,000 |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3,000 |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2,500 |  |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0 |  |

 기초 및 기말재고는 모두 완성품이며, 재공품 재고는 없다. 전부원가계산하에서 2월의 손익분기점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제품 단위 원가는 외부보고용 원가를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1,500단위 | ② | 1,600단위 | ③ | 1,700단위 |
| ④ | 1,800단위 | ⑤ | 2,000단위 |  |  |

**47.**㈜대한은 보조부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x3년도에 각 보조부문이 생산하여 타부문에 제공할 용역의 양과 보조부문의 원가에 관한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부문의 용역생산량과 타부문에 제공할 용역량   |  |  |  |  |  |  | | --- | --- | --- | --- | --- | --- | | 보조부문 | 보조부문의 용역생산량 | 각 보조부문이 타부문에 제공할 용역량 | | | | | S1 | S2 | P1 | P2 | | S1 | 400단위 | - | 80단위 | 200단위 | 120단위 | | S2 | 400단위 | 160단위 | 40단위 | 40단위 | 160단위 |   ·  S1과 S2의 변동원가는 각각 ￦260,000과 ￦40,000이다.  ·  S1과 S2의 고정원가는 각각 ￦40,000과 ￦40,000이다. |

 20x2년 말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현재 부문 S2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단위당 ￦400에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20x3년 초에 수락할 경우, ㈜대한은 부문 S2의 고정원가를 50%만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부문 S2의 설비는 타사에 임대하여 연간 ￦20,0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x3년 초에 ㈜대한이 ㈜민국의 제안을 수락하여 부문 S2를 폐쇄하고 ㈜민국으로부터 용역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대한의 20x3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800 증가 | ② | ￦1,000 증가 | ③ | ￦1,200 증가 |
| ④ | ￦1,400 증가 | ⑤ | ￦1,600 증가 |  |  |

**48.**㈜대한은 제품A를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제품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00이며,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이다. 제품A는 판매되지 못하면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며, 미리 생산한 제품A가 전량 판매된 후에는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다. ㈜대한이 예상한 제품A의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판매량 | 확률 |
| 500개 | 0.4 |
| 600개 | 0.3 |
| 700개 | 0.3 |

 제품A의 판매량에 관하여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정보시스템이 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
| --- | --- |
| ① | 기존정보하의 기대가치는 ￦155,000이다. |
| ② | 기존정보하에서는 생산량이 700개인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
| ③ | 완전정보하의 기대가치는 ￦17,000이다. |
| ④ |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는 ￦177,000이다. |
| ⑤ | 기존정보하에서 기대가치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였고 실제로 제품A가 500개 판매된 경우 예측오차의 원가는 ￦20,000이다. |

**49.**㈜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대한은 20x3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준은 연초에 수립되어 향후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대한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이용하여 변동제조간접원가예산을 설정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전부 기계작업준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이며, 원가동인은 기계작업준비시간이다. 기계작업준비활동과 관련하여 20x3년 초 설정한 연간 예산자료와 20x3년 말 수집한 실제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분 | 예산자료 | 실제결과 |
| 생산량(단위수) | 600,000단위 | 500,000단위 |
| 뱃치규모(뱃치당 단위수) | 250단위 | 400단위 |
| 뱃치당 기계작업준비시간 | 4시간 | 6시간 |
| 기계작업준비시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 | ￦55 |

 ㈜대한의 20x3년도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가 ￦37,500(불리)일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  |  |  |  |  |  |
| --- | --- | --- | --- | --- | --- |
| ① | ￦12,500(불리) | ② | ￦12,500(유리) | ③ | ￦25,000(불리) |
| ④ | ￦25,000(유리) | ⑤ | ￦0(차이 없음) |  |  |

**50.**예산과 성과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변동예산은 일정범위의 조업도수준에 관한 예산이며 성과평가목적을 위해 실제원가를 실제조업도수준에 있어서의 예산원가와 비교한다. |
| ② | 균형성과표에서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한 비재무적 성과측정치는 재무적 성과측정치의 선행지표가 된다. |
| ③ | 예산과 관련된 종업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종업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책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예산슬랙(예산여유)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 준다. |
| ④ | 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수익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에 4가지 관점의 성과지표 중에서 재무적인 성과지표를 가장 중시한다. |
| ⑤ | 종합예산은 조직의 각 부문활동에 대한 예산이 종합된 조직전체의 예산이며, 예정조업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므로 고정예산이다. |

|  |
| --- |
|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끝-